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3
------	-----

2004. 9. 7.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국장 진 익 철)

- 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내용
 -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당초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안 제11조제1항)
 -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일 20일 삭제, 평가서초안 공람일 30일을 20일로 10일 단축하는 등 총 협의기간 138일을 103일로 35일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승인을 받아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승인·허가 등의 당시의 규모보다 15%이상 증가한 경우와,
 -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의 규모로서 15% 미만 증가하더라도 평가대상 규모가 될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경우는 평가대상인데, 건축허가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비교)
-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내용
 - 위원회의 잦은 심의 및 결정관련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안 제17조제1항)
 -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평가서초안 검토시에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평가서 협의 절차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동조례 제1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이의신청, 제도개선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절차 면제여부 결정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보완하였음.(안 제17조제5항)

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2항)
-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였음.(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 중 식)

-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2. 9. 1부터 서울특별시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정하고, 조례상의 대상사업 규모를 보다 명확히 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의 참여를 확

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첫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대한 통보기간을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5일간 단축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제11조제1항) 또한 사업규모가 승인당시 규모보다 1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경우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완화하였음.(별표 1 비교)

둘째, 그 동안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상 3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 45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제17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중 환경영향평가 면제여부를 추가하였음.(안제17조 제5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건축계획승인 사전 승인전”에서 “건축허가 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음.(별표 1. 제1호 가목 10)

셋째, 상위법령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경우 요약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였고(제6조제2항) 사업자가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류하여 계약토록 하였음.(제7조제2항)

또한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계획과장으로 정비하였음.

□ 주요사안별 의견

첫째, 조례 개정시기의 부적정에 관한 의견임.

- 조례개정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등이 제·개정될 경우에 이를 근거하여 그때마다 개정하여야만 상위법령과 관련 제규정과 일관성과 법제의 안전성 및 신뢰를 가지므로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것임.
- 동 현행 조례안은 2002. 3. 20. 조례 제398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 1. 1.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 6. 30.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2003. 1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지금에 와서야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환경관리실장이 환경국장으로 교통기획과장이 교통계획과장으로 바뀐 지가 1년 8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담당직원들은 물론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둘째,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약식 명칭에 대한 의견임.

- 동 조례안 제17조 제1항에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이하 조에서는 “환경위원회”라 한다)하였고, 제18조 제1항에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이하 조에서는 “교통위원회”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는 교통, 환경, 재해 등 통합조례로서 여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약식 명칭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동 조례의 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므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특히, 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중 교통위원회는 우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같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환경평가대상 사업의 과다완화에 대한 의견임.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지침(2001. 4. 17, 환경부예규 제210호)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비교4의 나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규모미만인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규모가 15%이상이거나

15%미만 일지라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이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그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이상이거나 30%미만인 경우에도 증가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인 경우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기존 15%보다 100%를 더 완화시키는 규정으로써 완화폭이 과다하다 할 것이며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완화시키는지, 또한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은 아닌지, 그 동안 조례운행을 하면서 30%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본 후 15%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30%로 완화할 경우에 정말 필요한 일부만 할 것인지, 전체를 완화할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시비는 없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외에 조례 전체에 복잡하게 표현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변경함.
-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변경함.
- 개정안 [별표 1]의 비고 제4호의 라항 ……“다만 별표1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10)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에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추가하고 “건축물은”의 “은”을 “는”으로 변경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중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의 라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10)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호”를 “각 호의 1”로 한다.